

영등포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9.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6호로 2017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18년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 예정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충원과 기준인건비 내 승인된 고용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02’를 ‘1,405’로 개정(증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75’를 ‘1,378’로 개정(증 3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계 ‘1,402’를 ‘1,405’로 개정(증 3명)
- 일반직 총계 ‘1,397’을 ‘1,400’으로 개정(증 3명)
- 일반직 5급 총계 ‘64’를 ‘65’로, 보건소 ‘11’을 ‘12’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1,322'을 '1,324'로 개정(증 2명)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총 계		1,405	1,405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0	1,400			
일	3급	1	1	-	-	-
	4급	8	6	1	1	-
반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1,324	1,324			
직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일반직 인건비

1) 세부내역

○ 채용인원: 3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174,404	
기본급 (봉급)	96,071	5급(일반임기제, 의사)은 연봉 하한액 8급,9급은 각 직급 3호봉 기준
직급보조비	7,800	직급보조비 7,800천원
국민건강 보험금	4,723	국민건강보험금 4,723천원
연금 부담금 등	24,420	연금부담금 등 24,420천원

수 당	41,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1,44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14,438천원 - 정액급식비 4,680천원 - 명절휴가비 3,974천원 - 연가보상비 790천원 - 기술업무수당 16,068천원
-----	--------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17.5.20.)에 따라, 2018년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 예정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분야 전문 인력인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증원하고, 또한 고용복지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고용복지 분야 전담인력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직급별 세부 증원 내용 참조)을 살펴보면,

※ 직급별 세부 증원내용

직급	증원	증원 필요성
계	3명	
5급 (임기제, 의무)	1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운영에 따른 증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8급 (간호)	1명	○ 정신건강사업 분야 수요 증대에 따른 증원
9급 (사회복지)	1명	○ 고용복지분야 수요 증대에 따른 증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는 현재 1,402명에서 1,405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217억원 내에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의 5급 1명, 6급 이하 2명 등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 위와 관련하여, 신규증원에 따른 3명의 인건비 산출액은 연간 1억7천4백만원으로서, 2017년도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17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148억원임을 감안할때,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향후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 추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참조)

【 불 임 】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 121,700,397천원

□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 114,895,871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총 계	114,895,871
101 인건비	91,970,524
101-01 보수	73,482,627
101-02 기타직보수	5,270,292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217,605
204 직무수행경비	2,468,700
204-02 직급보조비	2,468,700
303 포상금	4,156,659
303-02 성과상여금	4,156,659
304 연금부담금등	16,299,988
304-01 연금부담금	13,596,757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703,231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